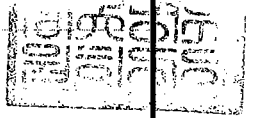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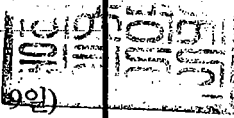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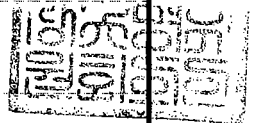
정 명	한 글	이 건 하	일본명	
	한 자	李 乾 夏	이 명	자 大始
출 생 연월일	1835년 4월 27일		사 망 연월일	1913년 11월 7일
주 소	京城 北部 東十字橋下東谷 14통 8호 [1910년 주소]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35. 4.27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 (전주이씨 광명대군파 족보)		
	1855. 3.	진사 (조선귀족열전, 202쪽)		
	1864.10.24	문과 급제 (같은 자료)		
	1864.10.	홍문관 부교리, 홍문관 수찬, 김제군수 (같은 자료)		
	1873.12.27	성균관 대사성 (고종실록, 1873년 12월 27일)		
	1877.10. 2	이조참의 (고종실록, 1877년 10월 2일)		
	1879.	도총부 부총관, 종정원경, 예조 참판 (고종실록, 1879년 3월 13일, 14일, 4월 23일)		
	1886.	병조 참판, 이조 참판, 한성부 좌윤, 형조 참판 (고종실록, 1886년 10월 10일, 12월 12일; 승정원 일기, 1887년 10월 29일, 1888년 10월 17일)		
	1889.	공조판서, 한성 판윤, 예조 판서, 한성 판윤 (고종실록, 1889년 10월 4일, 1890년 1월 1일, 1892년 5월 27일, 6월 18일)		
1892.10.9~1893.4.12	동지사 겸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옴 (고종실록, 1892년 10월 9일, 1893년 4월 12일)			



1893.	공조판서, 형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형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고종실록, 1893년 4월 25일, 6월 19일, 10월 25일, 11월 5일, 1894년 5월 9일)
1896.	공주부 관찰사, 충청남도 관찰사 (고종실록, 1896년 4월 2일, 8월 5일)
1898.	시종원경, 태의원경, 경효전 제조 (고종실록, 1898년 11월 11일, 22일, 12월 1일, 20 일)
1899.	비서원경, 의정부 찬정, 내부 대신, 학부 대신 (고종실록, 1899년 2월 9일, 4월 8일, 7월 13일; 관보, 1899년 2월 13일, 4월 9일 호외, 12일, 8월 6일, 19일 호외, 22일, 23일)
1899. 8.29	임시 서리 군부 대신 사무 임시 서리 궁내부 대신 사무 (고종실록, 1899년 8월 29일, 9월 19일, 관보, 1899년 8월 30일 호외, 31일, 9월 1일)
1899.12.10~1902.11. 9	내부 대신 (고종실록, 1899년 12월 10일, 1902년 11월 9일)
1900.9.28~1900.10.1 1900.10.7~1900.10.14 1900.10.22~1900.11.15 1901. 3. 5~1901. 3.15	임시 서리 의정 사무 (고종실록, 1900년 9월 21일, 12월 10일,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2일, 11월 15일, 1901년 3월 5 일; 관보, 1901년 3월 15일 호외)
1901.10.22~1903. 9.20	해민원 총재를 겸임 (고종실록, 1901년 10월 22일; 승정원일기, 1901년 9월 11일, 1903년 7월 29일)
1904년 ~ 1945년	
1904. 1.27	判敦寧院事 (고종실록, 1904년 1월 27일)
1904.	궁내부특진관 (고종실록, 1904년 2월 14일, 9월 3일, 9월 29일, 11월 12일)
1904.	시종원경 (고종실록, 1904년 3월 5일, 9월 11일)



1904. 9.30	景孝殿提調 (고종실록, 1904년 9월 30일)
1904.11.10	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 (고종실록, 1904년 11월 12일)
1905. 1.31	홍문관학사 (관보, 1905년 2월 2일)
1905. 2.17	충청남도관찰사 (고종실록, 1905년 2월 17일)
1905. 6. 5	중추원 의장 (고종실록, 1905년 6월 5일)
1905. 6.21	중추원 찬의 (고종실록, 1905년 6월 21일)
1905.11.25	을사조약 체결 대신들을 비판하며 여론대로 법률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림 (승정원일기, 1905년 10월 29일)
1906. 7.19	경효전 제조 (고종실록, 1906년 7월 19일)
1906. 7.25	궁내부 특진관 (고종실록, 1906년 7월 25일)
1906. 8.10	侍講院 日講官 겸임 (승정원일기, 1906년 6월 21일)
1907. 1.22	궁내부 특진관 (관보, 1907년 1월 25일)
1910.10. 7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공로로 남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5월 29일 부록)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종4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3.11. 7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11월 20일)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남작 수작

1910年 10月 7日 조선귀족령에 의해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음.

▶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男爵 李乾夏”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者가 左와 如다더라. (중략) 男爵의 部 (중략) 李乾夏 (후략)”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석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열한 자의 씨명은 左와 같더라. (중략) 동 [남작 - 인용자] 이건하 (후략)”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9일, 11일, 1911년 2월 23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1910年 10月 7日 朝鮮貴族令에 의해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男爵 작위를 받음.

【참고사항】 작위 세습

1914년 상속인 이범팔이 남자 작위를 습작함.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월 12일.

“大正二年十二月二十日 襲爵被仰付 故男爵李乾夏相續人 李範八”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每日申報』, 1911년 1월 14일,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하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交付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正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니 (중략) 동[남작 - 인용자] 이건하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일본 정부로부터 2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2)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및 서위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5월 29일 부록; 朝鮮總督府官房秘書課編, 『한국병합기념장수여자』, 1913.

1912년 8월 1일 <明治四十五年勅令第五十六號>에 의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합병에 관한 공로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大正元年十二月七日 敍從四位 男爵 李建夏”

【기타사항】 을사조약 체결 직후에 올린 상소와 관련하여

- 출전: 『승정원일기』, 1905년 10월 29일[음력 - 작성자].

을사조약 체결 직후 대신들을 비판하며 여론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

“중추원 찬의 이견하가 상소하기를,

(중략) 지금 성상께서는 위태로운 국면을 전환하여 안정시킴으로써 기필코 왕업이 중흥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아, 저 각부의 대신들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음으로 대신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구차하게 죄를 모면

능사로 여기고 구차하게 사는 것을 좋은 계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라의 체모를 손상시키고 이웃 나라의 모욕을 감수하면서 못 하는 것이 없으니, 천

하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는 이른바 임금은 있는데 신하가 없는 것이니,

아, 우리의 국정을 누구와 함께 처리한단 말입니까. 지금의 준엄한 여론은 실로 공

분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법사로 하여금 각각 해당

형틀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여론에 부응하소서.

(중략) 옛날 송나라의 조신 이강은 말하기를 ‘조종조의 강토는 죽음으로 지켜야지

한 치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항상 이 말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하는데, 폐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그 말을 아뢰고자 합니다. 오직 폐하

께서는 더욱 분발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어, 나랏일에 익숙하고 시무를 잘 알면

서도 충의를 소중히 여기고 명절을 숭상하는 사람을 다시 선발한 다음 조정에 세

우고 정부에 두시어 내치와 외교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중략)

하였는데, 비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떠나기를 청할 필요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판 단

1. 이견하는 1905년 11월 25일 을사조약 체결 직후 대신들을 비판하며 여론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일합병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고 1913년 11월 7일 사망할 때까지 그 작위를 유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작(受爵)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이견하는 1911년 1월 13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1912년 8월 1일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2월 7일에는 종4위에 서위되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거나 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이견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1910년 남작의 작위를 받고 1911년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으며,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종4위에 서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견하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